



: 2018-04-25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2052666 손해배상(기) 2017나2052673(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5가합502249, 2017가합 51127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018-04-25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5,7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4.경 복합운송 주선업, 선박·항공기 중개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G과 대학 동창으로서 2004. 4.경 원고의 등기이사 겸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대표이사에 선임되었고, 2014. 5.



경 퇴사하였다.

3) 피고 C는 2002. 8.경부터 2014. 5. 30.까지 원고 인천사무소의 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업무를 하였고, 피고 D은 2010. 6.경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인천사무소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E은 2007. 11.경부터 2014. 6. 13.까지 원고 인천사무소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어 통역, 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B의 피고 F 설립 경위

1) 피고 B는 2014. 2.경 베트남 사무소 신설 문제로 G과 이견이 생기자 2014. 5. 16. 당시 사내이사 G, H에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G은 2014. 5. 22. 피고 B의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2014. 5. 23. 피고 B가 관리 하던 원고 인천사무소의 직원 피고 C, D, E 및 I, J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이들의 지문 인식을 삭제하였다.

3) 피고 B는 2014. 6. 3.경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F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C, D, E 등은 2014. 7. 1. 모두 피고 F에 입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민·형사 소송 등

1) '피고 B가 원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 G을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의 2014. 5. 20.자 원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2014. 5. 22.경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G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 B 등은 2014. 9.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534호로 2014. 5.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 B 등은 2015. 1.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피고 B의 사내이사직 사임 승인 결의, G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등)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위조 등을 주장하면서 G과 H를 인천지방법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검찰청은 2015. 11. 19.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오히려 피고 B는 같은 날 G, H에 대한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7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6.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17.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041호)은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2016. 8. 31. 상고심(대법원 2016도9942호)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들 등에 대한 형사고소 및 피고 C, D에 대한 약식명령

1) 원고는 2015. 1.경 인천지방법검찰청에 '① 피고 B는 원고 직원들이던 피고 C, D, E 등으로 하여금 퇴사시 원고 영업비밀인 경영상 자료(거래처 정보, 인보이스 자료, 거래처별 견적가 및 운송단가) 등을 가지고 나오게 지시하고, 이에 피고 C, D, E 등은 퇴사시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 피고들 등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위 자료는 인보이스 등 가격정보가 포함된 원고의 영업비밀인데, 피고 B, C, D, E 등은 전산보안서약서와 전



산보안관리규정 등에 위반하여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피고 F은 이를 알면서 원고의 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피고 F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형사고소하였다.

2) 인천지방법검찰청은 2016. 3. 7. '① 피고 B는 원고 퇴사시 위 경영상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피고 C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② 피고 E은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③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C, D의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피고 D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피고 C는 2016. 3. 7. '2014. 5. 23.경 원고의 전산보안서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직원인 I, K를 통해 I 등 직원들이 관리하던 주요한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인보이스자료, 거래처별 견적가 및 운송단가 등)를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복사·저장하여 퇴사시 가지고 나온 후 2014. 7. 1. 피고 F에 입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고 F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원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0. 위 청구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한편 G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은 2016. 5. 18. 피고 B, D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5)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10. 31. 피고 B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3.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6) 피고 D은 '2014. 6. 17.경 원고의 전산보안서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거래처리스트 출력물(거래처명,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거래처별 담당직원 이름,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과 함께 원고 직원 K로부터 건네받은 거래처별 가격 견적서 등을 가지고 나온 후 2014. 7. 1. 피고 F에 입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고 F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원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7. 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9, 63, 65, 68, 100, 113호증, 을 제1, 2,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피고 C, D, E과 공모하여 화주내역서, 수출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 자료를 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F을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수의 거래처를 피고 F에 빼앗겨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B는 원고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와 같이 자료를 유출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된다.

다. 원고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유출하여 피고 F의 영업에 이용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C, D, E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위 자료를 유출하여 피고 F의 영업에 사용하였고, 피고 F은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거나 방조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피고 F의 경우 사용자책임)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5,744,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이 제397조 제1항으로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사직을 중임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4928 판결 등 참조).

2)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5. 16.경 원고 사내이사 G, H에게 원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6.경 원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가 피고 F을 설립할 무렵인 2014. 6. 3.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의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위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2) 갑 제3, 68, 114, 1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접대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2. 6.경부터 원고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기밀정보, 대외비정보, 공용정보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체 전산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로부터 전산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63, 100, 113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은 원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포워딩(국제 복합운송) 물류 전용 프로그램인 win-sabis 프로그램에 수시로 등록해 놓은 자료들인데, 원고 직원들은 win-sabis 프로그램으로부터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 자료들을 내려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놓거나 다른 직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업무에 활용하였고, 이를 개



인용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아 별다른 제지 없이 원고 소재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win-sabis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들을 전산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기밀정보, 대외비정보, 공용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적이 없고, 거래처 관련 정보나 거래 가격정보가 들어 있는 거래처별 수출입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을 다른 자료들과 분리하여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로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한 적도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경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피고들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67, 122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자료에는 경력직원들이 다른 회사에서 영업을 하였던 자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대표이사인 G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원들이 그만두면 1년에 2, 3명 정도 경력직원을 채용한다. 전직 또는 동종업체에 가기도 하는데, 영업직원이 우선 다니던 영업책임자와 합의를 하고, 거래하던 업체는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갈 형편이 안되면 두고 가기도 한다. 통상 이 업계에선 영업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관리하던 영업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도 경력직으로 채용한 영업직원들이 기존 회사의 영업자료를 가지고 원고의 영업에 활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 자료에는 영업직원들이 가지고 온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보통 영업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갈 경우 그 직원과 관리하던 업체에 대하여 조율하고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넘겨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 E도 수사기관(검찰)에서 "원고 회사에 영업직원이 11명 있는데 모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온 경력직이다. 통상 이 업계는 영업직원들이 회사를 옮길 때 자기들이 영업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 명함, 거래처 리스트, 견적서 등 자료를 가지고 다닌다. 위 11명이 모두 경력직이고 그들도 원고에 올 때 다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관리하던 영업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자료는 원고와 같은 포워딩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또는 정보이거나, 포워딩거래 내역을 win-sabis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은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① 포워딩업체의 직원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기 위하여 포워딩업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위 자료 중 거래처 리스트의 경우 포워딩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또는 정보라고 보인다.

② 수출 인보이스는 원고 영업의 결과로 거래를 하게 된 업체의 수출입 관련 포워딩업무 내역이고, 운임내역서는 포워딩업무의 수수료 내역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통해 얻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 정보, 운임 조정 과정, 거래처에서 중요시하는 서비스 내역 등을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아닌 위와 같은 내역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거래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내역, 거래업체의 클레임 처리 내역, 미팅 내용 등은 영업사원들만 공유하는 ERP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위 자료에는 ERP 프로그램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가 지출한 접대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은 영업 자체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를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투입된 원고의 투자나 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K는 피고 B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B가 따로 회사를 차려 독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인천사무실에 있는 업무적



인 영업적인 상황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3,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나 피고 F이 위 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C, D의 뒤에서 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는 퇴사 후 피고 F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F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 B의 컴퓨터에서는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 B는 퇴사시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위 압수·수색시까지 위 자료의 유출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온 피고 C, D도 피고 B가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C는 위 자료 중 거래처 명단을 피고 F의 직원 L에게 전달하여 화주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참조하게 한 것 외에는 위 자료를 자신의 통관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L가 위 자료가 원고로부터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④ 피고 D이 위 자료를 피고 F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업무상 배임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3, 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영업에 필요하여 거래처 및 견적서 등이 있는 화주리스트를 인쇄한 A4용지 5~10장 분량의 인쇄물을 개인자료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시 개인자료와 함께 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E이 퇴사시 개인자료를 가지고 나올 때 위 인쇄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이 위 자료를 유출하려고 하였다면 화주리스트 인쇄물 5~10장이 아니라 파일 자체를 복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이 위 인쇄물을 피고 F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E의 위 화주리스트 인쇄물 유출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E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6, 27, 51, 63, 100, 108, 113, 123호증, 갑 제13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 D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전산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 C는 원고 직원인 I을 통해 I, M의 폴더를, K를 통해 D, J 폴더를



이동식저장매체에 각 복사하여 원고가 관리하던 주요한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를 원고 회사 퇴사시 가지고 나와 2014. 7. 1. 피고 F에 입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고 F 영업에 활용하였다.

③ 피고 D은 원고 회사 퇴사시 K에게 개인자료라고 말하면서 자신 이름으로 된 폴더를 저장해달라고 부탁하여 K를 통하여 위 폴더(그 안에 원고 직원 J의 폴더도 저장되어 있었다)에 있던 원고의 거래처리스트 출력물(거래처명,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거래처별 담당직원 이름,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원고 직원 K로부터 건네받은 거래처별 가격 견적서 등을 가지고 나온 후 2014. 7. 1. 피고 F에 입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고 F 영업에 활용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은 "전산보안서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 퇴사시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온 후 2014. 7. 1. 피고 F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 명령(피고 C 벌금 300만 원, 피고 D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⑤ 한편 원고의 매출액 중 인천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55.8%, 2014년에는 48%에 이르렀는데, 피고 F이 영업을 개시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 중 99개 업체가 포워딩업체를 원고에서 피고 F으로 변경하였다.

⑥ 위 기간 동안의 원고 인천사무소의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원고는 2015. 6.경 피고 B 등이 근무하던 인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가지고 나온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



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피고 C, D이 퇴사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무단 반출하여 피고 F의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 C, D의 위 자료 유출 및 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의 거래처를 잃게 됨으로써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835,744,219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43개 거래중단업체의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처 상실로 인한 5년간의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1,835,744,219원이고, 그중 1차년도의 손해액은 530,980,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1,835,744,219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B는 2004. 4.경 원고 등기이사 겸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하는 등 원고 인천사무소의 영업을 오랫동안 담당함에 따라 인천사무소의 기존 거래업체들과 신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이직에 따라 포워딩 업체를 변경한 업체의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 B는 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피고 C, D의 위 자료 유출 및 사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포워딩업체를 변경한 거래처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C, D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4. 6. 이후 인천사무소 영업팀 직원 3명과 업무팀 직원 3명을 교체하여 기존 거래업체와의 업무진행이 과거처럼 원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원고 거래처 상실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의 피고 F에서의 업무는 원고에서와 같은 수출입 통관업무로서 피고 F의 직원에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참조용으로 전달한 것 외에는 자신이 위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거래업체의 포워딩업체 변경에 있어 위 자료의 활용 자체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 D은 가지고 나온 자료를 피고 F에서 자신의 영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이 원고에 근무할 당시 인천사무소 과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 B보다 거래처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위 감정인이 전제로 한, 원고에서 피고 F으로 포워딩업체를 변경한 거래처는 143개 업체로서 실제 피고 F으로 옮긴 거래처의 수와 다르므로, 위 손해액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



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3, 68, 100, 113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일부 회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자료 유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가 가지고 나온 파일은 모두 138개이고, 피고 D이 가지고 나온 파일은 모두 121개이며(그중 J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피고 C의 부탁으로 받은 자료이다), 위 피고들은 2014. 7. 1.부터 2015. 3. 5.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8개월간 위 자료를 피고 F에서 업무에 사용하였다.

② 위 파일들의 내용은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사업자번호 내역, 거래처별 견적서, 수출입 통관 서류 등이고, 이로부터 원고 거래처들의 수출입 현황과 원고의 포워딩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③ 다만 위 자료는 업무 내역을 입력한 win-sabis 물류 프로그램으로 관리 되던 자료로서 일반직원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고, 영업직원들만이 공유하는 거래업체에 대한 영업 내용을 기재한 영업 ERP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위 자료의 이용이 거래업체 변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인천사무소 소장이자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이직, 원고 인천사무소 직원의 과반수의 퇴사 등에 의한 원고의 매출감소는 피고 C, D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워딩 업체에서는 영업직원이 기존 거래처를 일부 가지고 나오는 관행이 있고, 위 자료에도 피고 D이 기존 업체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7.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
.
: 2018-04-25

판사 김윤선

판사 민달기